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허가대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4. 지원내용 중 '지원품목' 정보 참조)

< 지원 자격 >

-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24년 ~ '25년에 고용부 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 보건분야) 기술 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공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지원함
- '26년에 고용부 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 보건분야)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신속지원으로 연계하여 즉시 지원함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참여제한 사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그 외 공단 추진 재정 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 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예산) 128.25억원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 과거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방식) 공모방식(일정기관 일괄 접수)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 지원 제도 운영
 - 공모접수·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

구분	일반지원	신속지원
지원대상	환기장치 설치 희망 사업주	고용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지도를 받은 사업주
신청기간	공모접수 : '26. 1. 2. ~ 1. 30.	2026년*

* 연내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시

○ (지원품목)

지원 품목	품목 조건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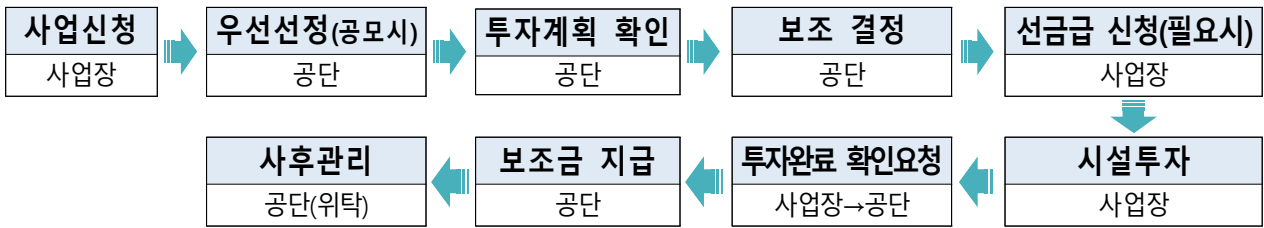
○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공사전) 제출하여야 함
- 동일 지원품목에 타기관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
- 인허가·신고 위반으로 공단에서 비용지원 한 지원설비를 철거 하는 등 시설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됨(덧붙임3 참조)

5. 세부 사업절차 및 조건



① 사업신청(사업장)

- (접수·선정) 공모방식(일정기간 일괄 접수)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6. 1. 2.(금) ~ 1. 30.(금) 18:00
-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 ※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우편 접수일자) 인정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문의 1644-8845, 덧붙임2 참조)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덧붙임 4-1 양식 참조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③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④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⑤ 사업자 등록증	
⑥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근거, 도면(계통도 등) 등 - 환기장치 설계근거 및 도면 : 설계근거(유해인자 종류, 환기장치 구조, 설계근거 등), 도면(계통도, 배치도 등)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세부내역서,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 사본 등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⑧ 중소기업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제출
⑨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덧붙임1 참조)	해당시 제출
⑩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할 경우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확인 등	덧붙임 4-1 양식 참조
⑪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 신청양식 공단 홈페이지 게시 (portal.kosha.or.kr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신청 →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 비용) → 공지사항)

- ② (선정) 공모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덧붙임1)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공단)
 -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
 - 급·배기환기장치,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품목 재원 분리 운영 및 선정
- ③ (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공단)
 -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 ④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 ⑤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주)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 (덧붙임 4-2 참조)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신청(사업장 요청 시)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
 - 선금급 신청양식(덧붙임 4-3 참조)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 금액의 80%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 공급업체에 위임 지급하지 않음
 - 공사업체,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⑥ (투자완료 확인)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제출서류

- 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 ③ 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 ④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⑥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 ⑦ 지급보증보험 증권
- ⑧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자필서명)
- ⑨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제출시기: 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시공 전)
- ⑩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⑪ 보조금 지급 위임장(해당시)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보고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자부담)

⑨의 서류는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검토)보고서를 작성(추후 공지 예정)

<지급보증보험 증권>

-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 5. 13. (지급보증기간: 4년)
보험기간: '26. 5. 1. ~ '30. 4. 30.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공단은 투자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시설의 적정여부 및 실거래 입증서류 적정여부 확인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설비 설치 장소,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사업장 요청시)**
 -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덧붙임4-3 참조)
 -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
-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 년도로 이월 지급될 수 있음

⑧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공단 위탁기관)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공단 위탁기관이 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며,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6.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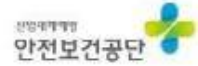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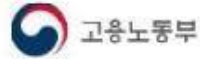
7. 기타사항


- (문의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9호),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 규칙 제1128호)을 따름

유의 사항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필요한
법적사항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 국소배기장치 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법적사항(인허가·신고)이 있습니다. 
- ✓ 공단의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신고 등의 법적 요건은 반드시 사업주가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허가 · 신고 부적정 사례

주요 부적정 사례	제재사항	관련 법령
총량규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로 인하여 배기구(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 시설 설치	시설폐쇄명령	환경정책 기본법 등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시설폐쇄명령	대기환경 보전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설계 · 시공하여야 하나 미등록 업체가 시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업자)	대기환경 보전법 제2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 위의 사항 외에도 지역, 사업장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 · 신고가 있음



인허가 · 신고 위반으로 공단에서 비용지원 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 됩니다.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주의사항】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첨부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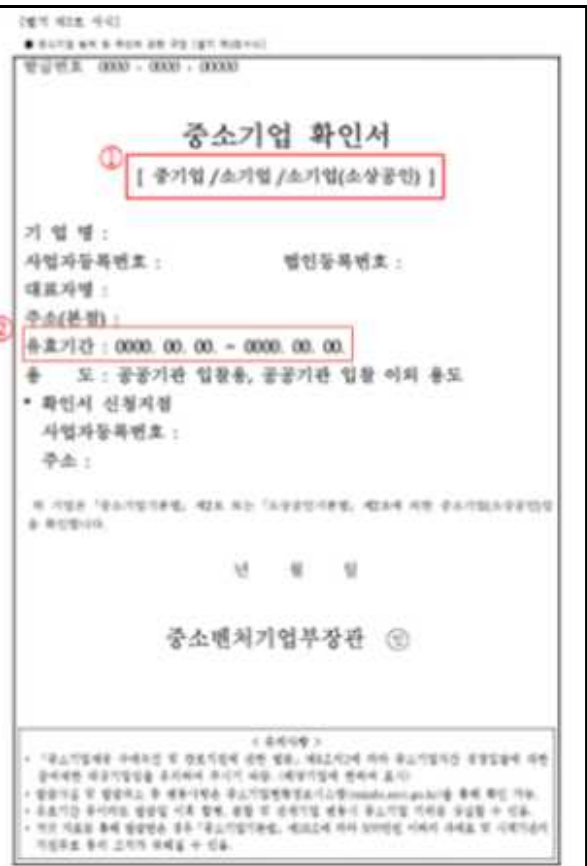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

-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2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Redacted]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Redacted]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Redacted]	보험료	₩ [Redacted]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Redacted] 계약기간 [Redacted] 계약체결일자 [Redacted] 계약금액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보험기간	2026년 6월 16일부터 2029년 8월 15일 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증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2026년 9월 19일부터 2030년 9월 18일 까지		
	30%		

첨부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①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②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②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③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④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페이백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사용, 미사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을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